#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

( 의안번호 제465호 )

# 심 사 보 고 서

1998. 3.

총 무 위 원 회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1998. 3. 13 고 성 군 수

나. 회 부 일 자 : 1998. 3. 16

다. 상 정·의 결 일 자 : 1998. 3. 16 상임위원회 상정·의결

## 2. 개정이유

○ 행정수요의 변화에 따라 인력을 합리적으로 재배치하여 새로운 행정수요를 흡수하고 생산성 높은 자치경영체제를 구축하기 위함.

## 3. 주요골자

○ 토목 + 건축 8급 1명 : 사업소(당항포관리사무소) → 본청

○ 기능직 10등급 1명 : 읍면(고성읍) → 본청

## 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○ 당항포관리사무소 토목(건축)직 1명을 지역개발과로, 고성읍의 수원지 기계관리요원 1명을 문화공보실의 소가야소식지 확대 편집요원으로 정원 조정하려는 내용으로

○ 행정환경변화에 따라 불요불급한 인력을 합리적으로 재배치함은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영군정 추진에 적합하다고 하였음.

## 5. 질의 및 답변

○ 문 : 당항포관리사무소 토목직(건축) 1명과 고성읍의 기능직 1명을 감소한 사유는

● 답 : 당항포 확장개발사업과 가족호텔 등 토목 건축관련 업무가 본청으로 이관되었으며, 진주남강댐 광역상수원으로 인하여 고성읍의 상수도 수원지 인력은 필요성이 없으므로 인하여 감소

## 6. 토 론 : 없음.

## 7. 심사결과 : 1998. 3. 16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